

#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 (시설급여)



공정거래위원회  
표준약관 제10068호

이용자, 제공자 및 대리인(보호자)은 장기요양급여 중 시설급여 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다.

| 계약당사자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
| 이용자<br>(갑)              | 성 명     | (인)  | 등 급<br>(인정번호) |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| 생 년 월 일 |  | 연 락 처         | 자택)<br>휴대폰)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| 주 소     |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| 기 타     | <input type="checkbox"/> 일반 <input type="checkbox"/> 40%감경대상자 <input type="checkbox"/> 50%감경대상자 <input type="checkbox"/> 60%감경대상자<br><input type="checkbox"/>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의료급여 수급권자(50%)<br>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의료급여 수급권자(60%)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
| 제공자<br>(을)              | 시 설 명   | 밝은요양원  | 시 설 종 류       | 노인요양시설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| 대표자 성명  | 송윤호  | 연 락 처         | 042-286-2863 |
|                         | 주 소     | (34698)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로 354-7 (대성동)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
| 대리인<br>또는<br>보호자<br>(병) | 성 명     | (인)  | 관 계           |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| 생 년 월 일 |  | 연 락 처         | 자택)<br>휴대폰)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| 주 소     |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

## 제1조 【 목적 】

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(장기요양급여수급자)에게 시설급여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.

## 제2조 【 계약기간 】

- ① 계약기간은 2026년 00월 00일 부터 2000년 00월 00일까지로 한다.
- ② 1항의 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.
- ③ ‘을’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‘갑’(또는 ‘병’)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, ‘갑’(또는 ‘병’)은 이후 15일 이내에 ‘을’에게 회신 하여야 한다.
- ④ 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‘갑’(또는 ‘병’)으로부터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을 경우 계약은 1년간 자동연장 된다.
- ⑤ 계약내용 변경사항(장기요양 인정등급, 장기요양 급여비용, 본인부담금 감경, 비급여비용 등) 발생 시 이를 즉시 이용료에 반영한다.
- ⑥ ‘갑’(또는 ‘병’)이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.
- ⑦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에 반영한다.
  1.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
  2.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
  3. 「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」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,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

## 제3조 【 입소·이용료 납부 】

- ① ‘갑’의 입소당월 이후 매월 이용료는 매월 20일 납부하기로 한다. (20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익일로 한다)
- ② ‘갑’ (또는 ‘병’)은 본인부담금과 비급여항목에 대한 비용을 전액 지불하여야 한다.
- ③ ‘갑’의 이용료 납부방법은 계좌이체(으)로 한다.
- ④ ‘갑’ 또는 ‘병’의 요구에 의한 개별적인 물품·용역의 구입과 개별적인 희망에 의해 외부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·서비스에 따른 실비는 ‘갑’ 또는 ‘병’이 별도 부담한다.

◇ 시설급여 (1일) - 2026년 장기요양급여비용

| 구분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등급     | 2등급    | 3등급    | 4등급    | 5등급    |
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
| 요양급여 | 노인전문요양시설(구 노인복지법)<br>노인요양시설(개정법) | 93,070  | 86,340 | 81,540 | 81,540 | 81,540 |
|      | 노인요양시설 치매전담실 가형                  | 0       | 96,950 | 89,400 | 89,400 | 89,400 |
|      | 노인요양시설 치매전담실 나형                  | 0       | 90,160 | 83,140 | 83,140 | 83,140 |
|      |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                     | 74,590  | 69,210 | 63,800 | 63,800 | 63,800 |
| 비급여  | 상급침실비(1인실 1박)                    | 원       |        |        |        |        |
|      | 상급침실비(2인실 1박)                    | 원       |        |        |        |        |
|      | 식재료비(1식)                         | 2,500 원 |        |        |        |        |
|      | 간식비1식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원       |        |        |        |        |
|      | 경관유동식1식                          | 2,500 원 |        |        |        |        |
|      | 이/미용료(월)                         | 원       |        |        |        |        |
|      | 등급외 본인부담금(1일)                    | 원       |        |        |        |        |

※ 외박을 한 경우에는 급여비용의 50%를 산정(이하 "외박비용"이라 한다)하되, 1회당 최대 10일(1개월에 15일)까지 산정할 수 있다.

※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(위원장 : 보건복지부 차관)가 결정, 고시하는 『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』 (보건복지부 고시)에 따름

< (안내) 수급자 자격별 본인부담 비율 >

| 구분   | 시설급여       |
|--|------------|
| 일반   | 20 %       |
| 기초수급권자   | 0 %        |
| 기타 의료수급권자  | 8 %        |
|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(희귀난치성, 만성질환자)<br>저소득층 (본인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·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) | 12 % , 8 % |

※ [근거규정] 노인장기요양보험법

제40조(본인부담금)

①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수급자가 부담한다. 다만, 수급자 중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권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재가급여 :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
2. 시설급여 :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

◇ 세부내역(30일 기준)

| 구분           |              | 금액(원)   | 내역  |
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|---|
| 총계 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|   |
| 요양보험<br>부담비용 | 소계           |         |   |
|              | 요양급여비용(0%)   |         |   |
| 개인<br>부담비용   | 소계           |         |   |
|              | 요양급여비용(100%) |         |   |
|              | 식사재료비/간식비    | 225,000 | 2,500(식사재료비) × 3식 × 30일 +<br>0(간식비) × 1회 × 30일 = 225,000원 |
|              | 이/미용료        |         |   |
|              | 등급외 본인부담금    |         |   |

< (안내) 비급여 대상 항목 및 기타 실비 수납기준 >

1. 비급여 항목 세부기준

1) 기본원칙

- ① 비급여 항목은 식사재료비,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, 이·미용비이며, 그 밖의 비용은 기관에서 임의로 수납할 수 없음
- ② 해당 비용은 원칙적으로 해당 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실제 소요비용(실비)만을 산정해야 하며, 별도의 이윤부가 불가

2) 세부기준

- ① 식사재료비 : 경관영양 유동식, 간식도 식재료비의 일종임
- ② 상급침실비
  - 1인실 또는 2인실 사용하는 경우 일반실에 비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수납
  - 상급침실은 (a) 반드시 고정된 벽으로 다른 공간과 구분되어 있고(파티션, 커튼 등은 불가), (b) 독립된 출입문을 갖추며, (c) 노인복지법 시설·설비기준에 의거한 1인당 면적기준(개정법 6.6㎡)을 충족하여야 함
- ③ 이·미용비
  - 수급자 희망에 의해 이·미용사 초빙하여 서비스 받는 경우 비급여 가능, 단 시설 종사자·자원봉사자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비급여 항목으로 수납 불가, 손·발톱 정리 등의 명목으로 별도 수납은 불가

2. 비급여 항목 외 실비 수납기준

수급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시설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실비를 수납할 수 있으며, 기관은 실비 이외에 추가비용을 수납하지 못함

**< 2026년 요양시설 계약의사 진찰에 따른 회당 본인부담금 >**

| 진료구분              | 본인부담금(기준) |         |         |         |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|
|                   | 일반(20%)   | 감경(12%) | 감경(8%)  | 의료(8%)  | 기초(0%) |
| 재진비용<br>(13,370원) | 2,670 원   | 1,600 원 | 1,060 원 | 1,060 원 | 0 원    |
| 초진비용<br>(18,840원) | 3,760 원   | 2,260 원 | 1,500 원 | 1,500 원 | 0 원    |

계약의사 진찰 서비스를 받으실 경우, 기존에 납부하던 시설 이용 본인부담금과는 달리 계약의사 진찰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별도로 시설에 납부하셔야 합니다.

**제4조 【 계약자의 의무 및 권리 】**

- ① ‘갑’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.
  - 1. 월 이용료 납부
  - 2.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에 협조
  - 3. 시설 내에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
  - 4.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
  - 5. 기타 시설생활 규칙 이행
- ② ‘을’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.
  - 1. ‘갑’의 건강관리 협조
  - 2. ‘갑’의 신변이상을 ‘병’에게 즉시 연락
  - 3. 식사제공 및 생활상담, 조언 및 생활편익 제공
  - 4.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
  - 5. 인적 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
- ③ ‘병’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.
  - 1. ‘갑’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
  - 2. ‘갑’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
  - 3. 인적 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
  - 4. ‘갑’의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‘을’에게 통보
  - 5. 기타 시설생활 규칙이행
- ④ ‘병’은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 요구할 수 있다.
  - 1. 「소득세법」에 따른 의료비 공제를 받기 위하여 해당 연도의 장기요양급여비 납부 내역의 확인을 요청
  - 2.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(별지 제24호 서식)에 대하여 세부 산정내역을 요구
  - 3. 급여제공범위에 대한 정보 요구
  - 4. 급여비용 및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

**제5조 【 계약해지 요건 】**

① ‘갑’의 해지

1. ‘갑’과‘병’은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퇴소를 결정할 수 있으며, 제2조 제6항에 의거하여 이에 대한 사항을 ‘을’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.

② ‘을’의 해지

1. ‘갑’의 건강진단 결과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」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
2. 타입소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
3. ‘갑’의 이용료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(단, ‘을’은 ‘갑’에게 서면으로 이용료 납부를 최고하고 ‘갑’ 또는 ‘병’이 최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)

**제6조 【 퇴소 】**

- ① ‘을’은 제5조②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 시 이에 대한 증빙서류와 함께 계약해지 의사를 ‘갑’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
- ② ‘갑’과 ‘병’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, 본원 소정의 퇴소신청서를 작성하여 ‘을’에게 제출하고 ‘을’의 보관물품을 인수하여 퇴소하여야 한다. 단, 사유물품을 1년 이내에 인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‘병’(또는 ‘갑’)에게 통보 후 ‘을’이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, 이에 대해 ‘갑’ 또는 ‘병’은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.
- ③ ‘을’은 ‘갑’이 퇴소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‘갑’이 지정한(또는 ‘병’)계좌로 지체 없이 지급한다.

**제7조 【 입소물품 】**

‘갑’은 시설입소 시 개인물품을 ‘을’과 협의하여 반입할 수 있다.

**제8조 【 면회 및 외출.외박 】**

- ① ‘갑’의 면회시간은 매일 09:00부터 18:00까지로 한다 (단 ‘갑’ 과 ‘을’ 또는 ‘병’이 동의할 경우 변경 할 수 있다).
- ② ‘갑’은 외출·외박시 사전에 ‘을’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
- ③ ‘을’이 제공하는 음식물 이외의 음식물을 ‘갑’이나 ‘병’이 반입하고자 할 때에는 ‘을’과 협의 후에 반입하여야 한다.
- ④ 외출·외박 중 ‘갑’에게 신체적·정신적 변화 등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 ‘갑’ 또는 ‘병’은 ‘을’에게 즉시 사실을 알려야 한다.

**제9조 【 시설관리 】**

- ① ‘을’은 보건, 위생, 방범, 방화 기타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시설 직원이 거실을 출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- ② ‘을’은 원무 행정상 필요한 경우 입소자의 거실을 재배치 할 수 있다.

## 제10조 【건강관리】

- ① '을'은 '갑'의 건강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'갑'과 종사자들에게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.
- ② '갑'이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진료が必要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.
- ③ 의사의 진료결과 입원이 필요한 질병이나 월 1회 이상 장기간 진료가 요구되는 경우 진료비와 부가서비스 경비(교통비, 외부간병인 등)는 '갑' 또는 '병'에게 별도 징수한다.
- ④ '을'은 입소시 갑의 건강상태 등을 확인하고 기록함은 물론, 갑에 대한 적절한 건강관리를 하여야 하며, 갑의 건강유지, 악화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.
- ⑤ '을'은 갑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활력증상 확인, 투약관리, 욕창관리, 낙상방지 등 건강관리 활동을 하여야 한다.
- ⑥ '을'은 '갑'이 의사로부터 월 2회 이상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며, 이상시 지체없이 '병'에게 통보한다.
- ⑦ '을'은 갑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물리치료, 재활치료를 제공해야 한다.

## 제11조 【시설물 배상】

- ① '갑'은 '을'의 시설물에 대하여 그 본래의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, '갑'에 의한 시설물의 파손 또는 멸실에 대하여는 '갑' 또는 '병'이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.
- ② '갑' 또는 '병'이 원상회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'을'은 시설물의 잔존가치 등을 고려하여 실비로 산출한 비용을 그 내역과 함께 문서로 제시하고 '갑' 또는 '병'은 이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.

## 제12조 【위급시 조치】

- ① '을'은 '갑'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된 때에는 협약병원, '갑'(또는 '병')이 지정된 병원 또는 관련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고 '병'에게 즉시 통보 하여야 한다.
- ② '병'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. 다만 대처가 어려울 경우에는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.
- ③ '갑'이 사망하였을 경우에 '을'은 즉시 병원으로 후송하고 '병'에게 즉시 통보 하여야 한다. 단, '병'과 사전에 협약이 있을 경우, '을'이 장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.
- ④ 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가 불가능할 때 '을'은 '갑'의 입소 입소월액 또는 시설의 운영비로 화장에 의한 장례를 집행하고 추후에 '병'과 정산할 수 있다.

## 제13조 【임종 및 장례】

입주자의 임종 및 장례절차는 가족이나 연고자가 있을 경우와 무연고자를 구별하여 정한다.

- ① 가족이나 연고자가 있을 경우
  1. 임종이 임박하였을 시 치료 및 입원은 '병'과 협의하여 결정한다.

2. 장례는 '병' 또는 신원인수인의 정함에 따라 가족이 장례절차의 모든 것을 수행하게 한다.

② 무연고자

1. 임종이 임박하였을 시 치료 및 입원은 '을'의 책임 하에 결정한다.
2. 장례는 행정기관과 협의하여 행정절차에 의거하여 장례가 수행될 수 있도록 한다.
3. 1개월 이내 관할 동(읍, 면)사무소에 사망신고를 한다.

**제14조 【 식사 및 간식 】**

- ① '을'은 1일 3식 및 간식을 '갑'에게 제공하며, '갑'의 상태에 따라 특별식을 제공할 수 있다. 특별식(경관급식비 등) 비용이 일반 수급자의 식재료비/간식비를 초과하는 부분은 '갑' 또는 '병'이 별도 부담한다.
- ② '을'은 식단표 및 간식제공계획에 대하여 사전에 '갑'에게 제공하고 게시하여야 한다.

**제15조 【 영양실의 배정 】**

'갑'의 영양실 배정은 입소순서에 따르며, 입소 후 '갑'의 건강상태, 수발조건,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'갑' 또는 '병'의 의견을 반영하여 '을'이 조정할 수 있다.

**제16조 【 개인정보 보호의무 】**

- ① '을'은 '갑'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.
- ② '을'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'갑'의 개인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.
- ③ '갑'의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에 대한 승낙은 서면(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) 으로 한다.
- ④ '갑'은 '을'이 수집·관리하는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.
- ⑤ '을'은 '갑'의 사생활을 존중하고,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

**제17조 【 기록 및 공개 】**

수급자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, 수급자나 가족이 요구할 경우 표준양식에 의거한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.

**제18조 【 배상책임 】**

-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'을'은 '갑'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.
  1. 시설 종사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'갑'을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
  2. 상한 음식을 제공하였거나 약을 잘못 투약하여 '갑'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
  3. 시설장비 또는 시설관리가 부실하여 '갑'을 부상케 하거나,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

